

‘99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●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제2항 :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·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의·분석하여야 한다.

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(공유재산의 범위)

- 제1항 :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부동산과 그 종물
이하 2호 ~ 7호 생략

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(공유재산의 종류)

- 제1항 :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·공공용재산·기업용재산·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.
 1. 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·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 2. 공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 - 3.4호 생략
 5. 잡종재산 - 제1호내지 제4호외의 모든 재산

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생략
- 제2항 :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('98. 7. 16 개정)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상(시·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에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 처분에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- 제3항 ~ 제5항 생략

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2항 : 생략

2. 검토의견

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'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은 호법면 하수종말처리장외 2건의 부지 이천시 단월동 273-1번지외 23필지 34,521m'를 3억 812만 6천원에 취득하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외 4건의

건물 19동, 4만 3,571.56㎡를 742억 6,577만 9천원에 신축하며, 이천시 중리동 2-5번지외 14필지 8만 5,267.4㎡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재산가액 16억 1,629만원에, 이천시 관고동 6-1번지 “구” 등기소건물 1동 408.36㎡를 처분하고 현 이천경찰서 부지 이천시 창전동 420-8번지 5,809㎡와 이천시 중리동 380-1번지 일원 16,530㎡의 이천경찰서 건립예정 부지를 교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, 절차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